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10-1판」 변경 시행 안내

1. 보육기반과-1480('22. 3. 18)호 관련입니다.
2.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('22. 4. 18.) 및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('22. 4. 18.)에 따라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10-1판」 *을 5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·시행하오니, 관할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안착기 (5. 23~) 전환 시 방역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대응지침 추가 개정 예정

○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변경사항

구 분	현 재	변 경
진단검사 체계 (p1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의심증상 및 확진자 접촉력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 - <u>RAT 검사 음성 판정시 7일 이내 1회 추가 실시(7일간 2회) 권고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의심증상 및 확진자 접촉력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 - <u>삭제</u> *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경우 원장의 확인서를 소지하여 산별진료소 방문, PCR 검사 실시 등 기타사항은 변동없음(동일)
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 (p1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자체조사) 접촉자 파악 및 안내 - <u>원장은 어린이집내 확진자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아래 보육시설 접촉자 분류기준에 따른 접촉자 명단을 작성, 해당 접촉자에게 방역수칙 및 진단검사 실시 안내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자체조사) 접촉자 파악 및 안내 - <u>접촉자 관리는 원내 자율관리로 전환, 다만,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1회 (권장) 안내 (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시간 내)</u> * 확진자 발생시 자자체 보고, 소독, 이용제한조치 등 기타사항 변동없음

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질병관리청장(역학조사분석담당관), 국방부장관(양성평등정책팀장), 서울특별시(보육담당관), 부산광역시(출산보육과장), 대구광역시(출산보육과장), 대전광역시(가족돌봄과장), 광주광역시(출산보육과장), 울산광역시(복지인구정책과장), 세종특별자치시(여성가족과장), 경기도지사(보육정책과장), 강원도지사(복지정책과장), 충청북도지사(복지정책과장), 충청남도지사(출산보육정책과장), 전라북도지사(사회복지과장), 전라남도지사(여성가족정책관), 경상북도지사(아이세상지원과장), 경상남도지사(가족지원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여성가족청소년과장), 한국보육진흥원장,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,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,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, 인천광역시(영유아정책과장)

주무관 **강노을** 보육기반과장 **이승현** 전결 2022. 4. 29.

협조자

시행 보육기반과-2400 (2022. 4. 29.) 접수

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(어진동) 13층 보육기반과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3583 팩스번호 044-202-3975 / sunset01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